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입주기관(기업) 모집공고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는 부산연구개발특구 내 육성사업을 위한 집적공간으로서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특구의 기술 발굴 및 창업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 협력 거점공간입니다.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에 입주하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창출에 기여할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시설개요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522-1,2,3

나. 규모 : 대지면적 19,188㎡, 연면적 : 12,965㎡ (본관8층 및 별관2층)

2. 임대대상 물건 : 본관 1~6층(세부 위치 붙임 참고)

3.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 2년 만료 시 1년 단위 연장가능

4. 입주가능일 : 공실 대상 상시 가능(입주신청일로부터 2주 내외)

※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입주 및 임대차 계약은 14일 이내 체결

5. 입주가능 업종 및 입주자 선정방법

가. 입주가능 업종(별표1 참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부산연구개발특구 R&D융합지구 입주가능업종

나. 입주업체 선정방법

선 정 방 법	비 고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입주심의기간 최소 2주 소요, 동일 위치 신청 시 조정될 수 있음.

6.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가.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표2,3]

나. 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다. 사업자등록증

라.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7. 신청서 접수 및 선정

가. 접수기간 : 상시 접수

나.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E-mail : khggang@innopolis.or.kr)

다. 접 수 처 : ☎49427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 41번길 71(미음동 1522-2)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사무실

라. 문 의 : 051-293-4852 강기훈 연구원

8.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납부 방법

가. 임대료는 3개월마다 분할 납부(1년치 선납 가능)

나. 일반관리비(월6,500원/평, 부가세 별도) 매월 납부

다. 수도광열비는 실비사용분에 대하여 별도 부과하며 매월 납부

9. 유의사항

가.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

나. 영업(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 다. 외벽에 입주기관(업체)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 라.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마.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우리 재단(부산본부)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임대받은 자의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우리본부가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 바. 공용면적 및 전용면적의 증감,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률에 의한 금액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변동은 없음.
- 사. 주차장 정기등록 주차 대수는 우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름.

10. 지원내용 : 휴게공간,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이용 편의 제공

입주대상 및 제한업종

1. 입주대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부산연구개발특구 R&D융합지구 미음일반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

구 분	입주가능 업종 및 유형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0, 21, 24, 25, 26, 27, 28, 29, 30, 31, 35, 582, 62, 63, 70, 715, 72, 732, 739
해외연구기관 및 외투기업	○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기업의 국내사무소 ○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공동연구센터
공공기관, 공익법인	○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 중소기업지원 및 수.출입 지원기관 ○ 지역산업육성 정책개발기관 등
연구및개발업	○ 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시제품 생산기관(연구개발업)
연구소 기업 등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및 특구육성사업 수행기관
기술금융기관	○ 창업투자회사, IP금융전문회사, 은행, 기술금융센터 등
기술사업화서비스 전문기관	○ 기술거래.기술평가.기술사업화 컨설팅 기관 및 기업 ○ 창업.경영.세무.회계.법무.특허 컨설팅(교육) 기관 및 기업 ○ 마케팅.디자인.교육.정책연구 관련기관 및 기업 등
기술공급기관. 기술수요기관	○ 기술지주회사, 기업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등
기타	○ 기술사업화관련단체(TLO협의회, 포럼, 협회 등) ○ 초기 일반기업 등(창업지원)

※ 입주가능업종외 외 업종은 연구개발특구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에 따라 특구관리권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입주할 수 있음.

2. 입주제한

- 도금 및 도장업종, 입주가능업종 중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입주 제한 업종
- 철강주조업(2431), 비철금속제조업(2432)) - 무기 및 총포탄제조업(2520),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 자동차제조업(3012) - 전투용차량제조업(3191),모터사이클제조업(3192) - 도금업 관련시설, 대기 및 수질 1·2종 사업장(26,27,28) - 매니저업(73901)